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영 제3조의2 신설).

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
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영 제9조의4 및 별표 4 신설).

다.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의 실시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영 제15조제3
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고 건 인
국 무 총 리

2004년 4 월 19일

국 무 총 리 고 건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허 성 관
장 관

◎대통령령 제1837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를 “오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
공업)”로 하며, 동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
(시설의 시공·관리)”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5조(시
설의 시공)”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제4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
접지급)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672호

관

부

2004. 4. 19. (월요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 “제64조의3(채납처분의 위탁)”을 “제64조의2(채납처분의 위탁)”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다)중 “조치유형별 점수(조정 0.5,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를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서면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0.5, 신고사건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의한 경고 1, 시정권고 1.5, 시정명령 2, 과징금 2, 고발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조치유형별 점수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정조치유형별 점수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107호, 2004. 1. 20. 공포, 2004. 4. 21.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함(영 제4조제1항).

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직접지급의 방법 및 조건 등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하도록 함(영 제4조제3항 및 제4항).

라.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서 하도급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정벌점(0.5)을 삭제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와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서면 직권조사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내용을 자진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어 경고하는 경우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유형별 점수에서 경고점수를 1.0점에서 0.5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진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함(영 별표).

<법제처 제공>

부 령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4 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보틀리눔독소증

제1조의4의 제목중 “전염병”을 “전염병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또는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및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을 “전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전염병환자등,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로 한다.

제1조의5제2항중 “별표 1의2와 같다”를 “별표 1의2와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로 한다.